제6편 위원회 6-1-19

##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

2007. 05. 15. 최초제정2018. 04. 01. 부분개정2008. 10. 07. 부분개정2019. 06. 03. 부분개정2009. 05. 01. 부분개정2020. 06. 01. 부분개정2012. 08. 01. 부분개정2021. 02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 (이하 "평의원회"라 칭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평의원회는 당해 대학 교수, 직원, 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.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02.01.>

- 1. 교수 3인
- 2. 직원 2인
- 3. 조교 및 학생 각 1인<개정 2021.02.01.>
- 4.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(이하 "외부 평의원"이라 한다) 4인 이상<개정 2021. 02.01.>
-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.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(자격) ①평의원회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수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재직 자. 단, 보직처장. 단장. 부속기관장은 제외 함.
- 2. 직원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정규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재직 자. 단, 보직처장은 제외 함.
- 3. 조교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조교로 재직 중인 자<개정 2020.06.01., 2021.02.01.>
- 4. 학생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 재학생<신설 2021.02.01.>
- ②제1항의 자격 외에도 각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출 및 위촉) ①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선출과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- 1. 교수 평의원은 학칙이 정한 전체 교수회에서 "교수평의원 선거규정"에 의거 선출하여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- 2. 직원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선출하여.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- 3. 조교 평의원은 조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고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1.02.01.>
- 4. 외부 평의원은 동문. 또는 각계의 전문가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1.02.01.>
- ②평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과정 등은 따로 정한다.

제6편 위원회 6-1-19

제5조(평의원의 임기)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.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평의원 구성단체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의뢰하고 각 구성단체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장은 즉시 각 평의원 구성단체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고 각 구성단체에서는 추천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의원 자격상실) ①교수 평의원<u>과</u> 직원 평의원 및 조교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21.02.01.>

- 1. 휴직 및 퇴직
- 2. 징계에 의한 직무해제
- 3. 사임서를 제출한 때
- 4. 평의원이 그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②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하다.

- 1. 휴학 및 졸업
- 2.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<개정 2020.06.01.>
- 3. 3개월 이상의 교환 학생으로 파견
- 4.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제7조(의장과 부의장)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둔다.

-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이를 대리한다.

제8조(간사) ①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회의소집) ①평의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.

②평의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평의원에게 사전 공지한다.<개정 2018.04.01.>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9.06.03.>

제11조(기능) ①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

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- 4.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8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총장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. 총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2조(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) ①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04.01.>
- ③삭제 <2018.04.01.>

제12조의2 삭제 <2018.04.01.>

제12조의3 삭제 <2018.04.01.>

제13조(출석 및 자료요청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교직원을 평의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유지)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회의록) ①평의원회 회의록은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.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평의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8.04.01.. 2021.02.01.>

제16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. 회의비를 포함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의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둘수 있다.

제18조(담당부서) 대학평의원회에 관련 사무는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<신설 2018.04.01.>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후. 최초로 구성하는 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는 2009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. 단. 최초로 위촉된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.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제6편 위원회 6-1-19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조교 평의원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